1. 제재 결의일 : '11. 8. 19

2.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

□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제2-74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직원(퇴직자 포함)이 제2-7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지하거나 직원에게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부과한 경우 인지일 또는 부과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

○ ◇◇증권은 조사대상기간('10.1.1~'10.12.31) 중 소속 직원의 내부 횡령에 의한 징계처분 2건(정직, 면직처분)을 협회에 보고 누락한 사실이 있어 **"주의"** 조치를 부과

3. 제재 종류 및 내용

제재대상	제재의 종류
1개 회원사	주 의

<관련 규정>

1.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제2-73조

2.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」제2-74조